# 인증절차안내서

Certificate process

인증시스템 지침서

Doc. No : CBI-01 Date : 2024/01/29

Edition/Rev.: 1/5

개정번호 (Rev. no)	개정일자 (Rev. Date)	조항번호	개정내용		
1.0	2016.06.01	전면개정	절차서 통합에 따른 전면개정		
1.1	2017.01.02	4.2	BCMS도입에 따른 개정		
1.2	2019.07.01	12	인증표시 및 인증마크 사용방법 개정		
1.3	2021.08.26	11.5	인증범위 축소기준 추가		
1.4	2023.05.04	4.2, 10.3	ABMS,CMS도입에 따른 개정		
1.5	2024.01.29	8.7.8	인증복구사항 개정		

**인증시스템 지침서** Edition/Rev.: 1/5 Doc. No : **CBI-01** Date : **2024/01/29** 

#### 1. 목적

이 안내서는 인증등록 신청자 및 등록된 조직(이하'인증기업'이라 함)에게 인증관련 절차 및 심 사결과에 의해 발생된 문서의 취급, 인증유지를 위한 의무와 유지, 정지, 취소 기준 및 인증등록 에 따른 최신정보를 적절하게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.

#### 2. 적용범위

크레비즈인증원(이하 '인증기관'이라 함)의 인증절차 안내에 대하여 적용한다.

#### 3. 일반사항

- 3.1.인증절차안내서의 작성 및 활용은 "인증정보제공(CBP-10)" 절차에 따른다.
- 3.2.기타 세부내용 및 심사절차는 홈페이지(www.crebizgm.co.kr)를 참조한다.

## 4. 인증신청

- 4.1.인증기업으로부터 인증에 대한 상담 요청이 있는 경우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.
  - (1) 조직 기본정보 조직명, 위치, 종업원 수, 연락처, 인증범위
  - (2) 인증 받고자 하는 표준 및 시기
- 4.2. 인증을 획득하고자 하는 경우, 인증기업은 아래의 서류를 제출한다.
  - (1) 인증신청서 및 설문서
  - (2) 사업자등록증
  - (3) 조직도
  - (4) 제조공정도(업무흐름도)
  - (5) 공장등록증(해당 시)
  - (6) 사업관련면허증(해당 시)
  - (7) 인원증빙서류(4대보험가입자 또는 직원명부 외)
  - (8) 환경경영시스템 신청 시
    - 환경영향평가표, 법규등록부, 위탁 계약서(폐기물 위탁 처리 시)
  - (9)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신청 시
    - 법규등록부, 안전보건 리스크 식별자료, 물질안전보건자료(MSDS)
  - (10) 비즈니스연속성경영체제 신청 시
    - BIA, RA자료, 비상시조직도
  - (11) 부패방지경영시스템 신청 시
    - 부패리스크 식별자료
  - (12) 규범준수경영시스템 신청 시

Doc. No: CBI-01

Edition/Rev.: 1/5
Date: 2024/01/29

- 주요 준수의무 법규 및 규제사항

#### 5. 계약검토 및 인증제안

- 5.1.인증기관은 인증신청서 및 설문서, 증거자료를 기반으로 다음 사항을 검토한다.
  - (1) 인증심사에 적용되는 경영시스템 표준
  - (2) 인증기업 및 경영시스템 정보가 인증심사를 진행하기에 충분함
  - (3) 인증기관의 인증심사 기준 및 절차에 대한 인증기업의 이해
  - (4) 신청 인증범위에 대한 인증기관 내 인증수행범위 지정 여부 및 심사원 보유현황
  - (5) 인증범위 분류, 리스크, 사업장 위치, 규모, 인원 등을 고려한 총 심사일수(MD)
  - (6) 복수사업장 여부
  - (7) 기타 심사에 필요한 사항(언어, 공평성, 안전성, 접근성 등)
- 5.2. 검토결과 인증신청이 가능한 경우 인증기관은 계약검토서를 근거로 하여 인증표준, 심사비용, 제 안서 유효기간을 포함한 인증심사제안서를 작성하여 인증기업에게 발송한다.

#### 6. 인증심사 계약체결

- 6.1.인증기업은 인증심사제안에 동의하면 인증심사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 계약을 체결한다. 계약서 에는 쌍방간 법적 효력을 갖는 인감 혹은 대표자 자필 서명으로 유효성을 확인한다.
- 6.2.인증기업의 사업장이 다수일 경우 각각의 사업장을 계약서 상 모두 명기한다. 단, 사업장 별로 독립된 계약서가 필요한 경우 각각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.
- 6.3. 인증심사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인증등록 만료일까지로 하며 별도의 해지 요구가 없거나 인증이 취소되지 않는 한 갱신심사 시 자동 갱신되는 것으로 한다. 인증이 취소되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해지된다.

#### 7. 심사계획서

- 7.1.인증기관은 심사계획서를 인증기업 및 심사원에게 송부하며, 심사팀장은 심사 세부일정표를 기업에 전달한다.
- 7.2.심사계획서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다.
  - (1) 인증고객현황
  - (2) 인증범위 및 인증수행범위
  - (3) 인증표준
  - (4) 심사의 목적
  - (5) 심사팀 및 심사팀의 역할 및 책임

Edition/Rev.: 1/5 Doc. No: CBI-01 Date: 2024/01/29

인증시스템 지침서

- (6) 심사일정, 심사일수, MD
- (7) 심사장소

#### 8. 인증심사

- 8.1. 인증심사(1단계, 2단계)는 해당 표준에 대한 경영체제 구축, 문서화 이후 문서화된 절차와 방법 에 따라 인증기업의 활동을 시행 유지(구축된 체제하에서 제품생산 및 서비스 운영 실적이 있는 경우)하고 내부심사와 경영검토를 최소한 1회 이상 수행하였을 경우에 심사가 가능하다.
- 8.2.시스템 문서가 인증심사 기준에 적합하게 구축되어 있고 구축된 시스템의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인증기업의 활동이 적절하게 시행, 유지되고 있음이 심사를 통하여 인정되고 지적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가 완료되는 경우에 인증서를 발급(갱신의 경우 재발급)할 수 있다.

#### 8.3. 최초 심사

경영시스템을 인증 받기 위하여 최초로 실시되는 심사로 1단계 및 2단계 심사로 실시된다.

- 8.4.1 단계 심사
- 8.4.1.인증운영담당자는 심사 전 심사계획서를 인증기업에게 전달하고 이의가 없을 경우 1 단계 심사 를 실시한다.
- 8.4.2.1 단계심사는 인증기업의 현장에서 이루어짐을 원칙으로 하나, 예외적으로 인증기관에서 진행 될 수 있다. 이 경우 매뉴얼 및 절차서, 내부심사, 경영검토, 필요 시 환경측면, 환경영향평 가, 위험성평가 등 해당되는 인증기업의 문서화한 정보를 전달받아 실시한다.
- 8.4.3.1 단계 심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.
  - (1) 인증기업의 경영시스템을 문서화한 정보 검토
  - (2) 인증기업의 위치 및 사업장별 상태를 평가하고, 2 단계 심사를 위한 준비상태를 결정하기 위하 여 인증기업의 인원들과 논의
  - (3) 표준의 요구사항, 특히 경영시스템의 주요 성과 또는 중대한 측면의 파악, 프로세스, 목표 및 운영과 관련된 인증기업의 상태 및 이해정도를 검토
  - (4) 다음을 포함하여 경영시스템의 인증범위와 관련된 필수 정보 획득
    - ① 인증기업의 사업장(들)
    - ② 사용된 프로세스 및 장비
    - ③ 수립된 관리 수준(특히 복수사업장을 보유한 인증기업의 경우)
    - ④ 적용가능한 법적, 규제적 요구사항
  - (5) 2 단계 심사를 위한 자원의 배정에 대해 검토하고 2 단계 심사의 세부사항에 대하여 인증기업 과 합의

인증시스템 지침서 Edition/Rev.: 1/5 Doc. No : CBI-01 Date : 2024/01/29

(6) 중대한 측면과 관련하여 인증기업의 경영시스템 및 사업장 운영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함으로 써 2 단계 심사 계획을 위한 중점사항 제공

- (7) 내부심사와 경영검토를 계획 및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고, 인증기업이 2 단계 심사를 받을 준비가 되었음을 경영시스템의 실행 수준이 입증하고 있는지를 평가
- 8.4.4.심사의 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요소 또는 경영시스템에 포함되지 않은 관련표준 요소는 심사결과보고서에 기재하여 보고한다.
- 8.4.5.1 단계심사보고서는 심사팀장이 작성하고 인증기업의 서명을 받음으로써 내용이 합의된다. 단, 인증기업의 사업장에서 심사가 진행되지 않는 경우 심사종료 이후 인증기업에게 이를 송부 하여 조치하도록 한다.
- 8.4.6.1 단계 심사 중 우려사항이 발견되어 인증기업이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 1 단계 심사 종료후 30 일까지 2 단계 심사 일정을 변경할 수 있다. 단, 인증기업에게 타당한 사유나 요청이 있는 경우 이를 60 일까지 변경할 수 있으며, 해당 사안은 기록되어야 한다.
- 8.4.7.1 단계 심사 중 경영시스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변경이 발생되는 경우, 1 단계 심사를 전체 또는 일부 재실시 하는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. 심사팀은 이를 검토하여 인증기업에 게 통보하여야 한다.
- 8.5.2 단계 심사
- 8.5.1.2 단계 심사는 1 단계 심사 결과를 토대로 작성된 세부일정표와 심사계획서를 인증기업에게 통보하고 이의가 없을 경우 실시한다. 2 단계심사는 심사프로세스 절차에 따라 시행하며, 인증기업의 사업장에서 실시하여야 한다.
- 8.5.2.2 단계 심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.
  - (1) 해당 경영시스템 표준 또는 기타 기준문서의 모든 요구사항에 대한 적합성에 관한 정보 및 증거
  - (2) 주요 성과 목표 및 세부목표(해당 경영시스템 표준 또는 기타 기준문서의 기대에 부합함) 대 비 성과의 모니터링, 측정, 보고 및 검토
  - (3) 적용 가능한 법적, 규제적, 계약적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는 것과 관련된 인증기업의 경영시스템 능력(ability)과 성과
  - (4) 인증기업 프로세스의 운영 관리
  - (5) 내부심사 및 경영검토
  - (6) 인증기업의 방침에 대한 경영책임
- 8.5.3.1 단계심사 시 발견된 우려사항에 대한 인증기업의 조치결과에 대한 유효성 및 이행상태를 검 토한다.

Doc. No: CBI-01

Edition/Rev.: 1/5
Date: 2024/01/29

#### 8.5.4. 시작회의

- 8.5.4.1. 심사팀은 조직의 경영진 및 해당부서의 책임자와 함께 2 단계심사시의 시작회의 절차에 준하여 시작회의를 실시한다.
- 8.5.4.2. 시작회의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실시하며, 심사회의참석확인서를 작성한다.
  - (1) 참석자의 역할을 포함한 참석자의 소개
  - (2) 인증범위에 대한 확인
  - (3) 심사계획(심사의 유형과 범위, 목적과 기준을 포함), 변경사항 및 종결회의 일시, 심사팀과 피심사 조직 경영자와의 중간회의등과 같은 피심사자와 관련된 준비사항에 대한 확인
  - (4) 심사팀과 고객과의 공식적인 의사소통 채널
  - (5) 심사팀에 필요한 자원 및 시설의 가용성 확인
  - (6) 비밀준수와 관련된 사항 확인
  - (7) 심사팀을 위한 관련 작업안전, 비상사태 그리고 보안 절차 확인
  - (8) 안내자 및 관찰자의 가용성, 역할 및 신원에 대한 확인
  - (9) 심사 발견사항에 대한 모든 등급을 포함한 보고 방법
  - (10) 심사가 조기에 종료될 수 있는 조건에 관한 정보
  - (11) 인증원을 대표하여 심사팀장과 심사팀이 심사에 대한 책임을 지며 심사활동 및 심사 추적을 포함한 심사계획의 실행을 통제해야 한다는 것을 확인
  - (12) 해당되는 경우 이전 검토 또는 심사의 발견사항에 대한 상태 확인
  - (13) 샘플링을 기반으로 한 심사 수행에 사용되는 방법 및 절차
  - (14) 심사중에 사용되는 언어의 확인
  - (15) 심사 중에 고객에게 심사진행 상황 및 다른 관심사항의 지속적 전달에 대한 확인
  - (16) 고객에게 질문할 기회
- 8.5.5.심사팀 회의
- 8.5.5.1. 심사팀은 다음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심사팀 회의를 최소 일일 단위로 실시한다. 심사 발견사항의 협의 및 부적합의 합의를 위하여 인증기업을 참석시킬 수 있다.
  - (1) 심사프로그램 적절성 확인 및 심사팀원 간 업무 재배정의 필요 논의
  - (2) 심사 중 발견사항 및 이에 대한 세부적인 조사 방법
  - (3) 부적합 사항의 결정
  - (4) 심사결론에 대한 합의
  - (5) 필요한 모든 후속조치의 합의
- 8.5.5.2. 심사 중 발견사항이 심사 목표에 달성할 수 없거나 긴급하고 심각한 위험(예 : 안전)을 나타내는 경우 심사팀장은 이를 즉시 인증기업 및 가능한 경우 인증기관에 보고한다. 사안에따라 심사계획서의 재확인 또는 변경, 심사 목표 또는 심사 범위의 수정, 심사의 종료 등을

인증시스템 지침서 Edition/Rev.: 1/5 Doc. No : CBI-01 Date : 2024/01/29

조치할 수 있다. 심사팀장은 정해진 조치를 인증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.

- 8.5.5.3. 심사팀은 1 단계 및 2 단계 심사 중 수집된 모든 정보 및 심사 증거를 분석하여 발견사항을 검토하고 심사결론에 합의하여야 한다. 모든 정보 및 심사 증거는 심사보고서에 기록되어 야 한다.
- 8.5.6.정보 획득 및 검증
- 8.5.6.1. 심사팀은 심사의 증거로서 심사목적, 범위 및 기준에 관한 정보를 적절한 샘플링을 이용하여 수집하고 검증하여야 한다. 정보의 수집은 면담, 프로세스 및 활동의 관찰, 문서 및 기록의 검토 등이 포함된다.
- 8.5.6.2. 심사 중 발견사항은 증거로서 식별, 분류 및 기록되어야 한다.
- 8.5.7. 부적합보고서 발행
- 8.5.7.1. 심사팀장은 심사팀 회의를 통해 발견된 부적합사항을 부적합보고서를 통하여 발행한다. 부적합사항은 인증기업이 이를 정확히 이해하고 협의하여야 하며, 부적합보고서 내 심사팀장과 인증기업의 서명으로 이를 확인한다.
- 8.5.7.2. 부적합사항은 해당 요구사항, 부적합 근거, 객관적 증거가 포함되어야 하며, 경부적합과 중부적합으로 구분한다.
- 8.5.7.3. 심사원은 부적합사항에 대한 원인이나 해결책을 제시할 수 없다.
- 8.5.7.4. 다음과 같은 경우는 중부적합으로 발행한다.
  - (1) 규정된 요건에 대한 실행실적이 전혀 없는 경우
  - (2) 부적합 유효성 확인 시 전회 발행된 부적합과 동일한 사안이 재발견되거나, 개선의 여지가 없
  - 어 시스템이 후퇴 또는 붕괴된 경우
  - (3) 동일한 요건에 대해 대부분의 심사대상 부서에서 부적합이 발견된 경우
  - (4) 재발되는 고객불만에 대한 원인조사 및 조치기록이 없는 경우
  - (5) 품질관련 업무 또는 공정이 시스템에서 누락된 경우
  - (6) 기타 심사팀장이 시스템에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
- 8.5.7.5. 다음의 경우는 경부적합으로 발행한다.
  - (1) 부적합사항이 교육훈련의 부족, 조직간 정보공유 누락, 검토, 승인의 지연상태에서의 업무진행, 식별표시의 부분적 미실시 등과 같은 사항으로 제품품질 또는 환경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
  - (2) 업무절차의 미 준수가 단순한 실수로 판단되는 경우

Edition/Rev.: 1/5 Doc. No : **CBI-01** Date: 2024/01/29

(3) 규정과 다르게 업무가 수행되고 있으나 수행되는 절차대로 문서가 개정될 경우 보다 더 효율 적인 시스템운영이 기대되는 경우

#### 8.5.8. 종료회의

- 8.5.8.1. 2 단계심사 종료 후 심사팀은 인증기업의 경영진 및 해당부서의 책임자가 참석한 상태에서 종료회의를 실시한다.
- 8.5.8.2. 종료회의는 다음을 포함하여야 한다.
  - (1) 수집된 심사 증거는 정보의 샘플을 근거로 한 것임을 인증기업에게 알려준다. 그러므로 불확 실성의 요소가 포함되어 있음
  - (2) 심사 발견사항의 모든 등급을 포함한 보고 방법과 기간
  - (3) 인증기업의 인증 상태와 관련된 결론을 포함하여 인증기관의 부적합 처리 프로세스
  - (4) 심사 중 확인된 모든 부적합사항에 대해 인증기업이 시정 및 시정조치 계획을 제출해야 하는 기간
  - (5) 차기심사주기를 포함한 인증기관의 심사 후 활동
  - (6) 불만처리 및 이의제기 프로세스에 관한 정보
- 8.5.8.3. 종료회의에는 발행된 부적합사항에 대한 판단 근거를 설명하고 인증기업이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.
- 8.5.8.4. 심사팀장은 발행된 부적합에 대하여 조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 만일, 조직이 동의하지 않 는 부적합사항이 있을 경우 인증부서장에게 통보하여 이의제기 및 불만처리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.
- 8.5.8.5. 심사팀은 확인된 부적합사항의 시정을 위해 인증기업이 취해야 할 구체적인 조치 및 정해 진 기간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. 부적합사항의 확인심사가 필요한 경우 인증기업에게 통보 하고 일정을 수립하여야 한다. 또한 부적합보고서에 대한 시정이 완료된 것이 확인되기 전 에는 인증서가 발급될 수 없음을 공식 통보한다.
- 8.5.8.6. 2 단계심사보고서는 심사팀장이 작성하고 인증기업의 서명을 받음으로써 내용이 합의된다. 심사팀장은 작성된 보고서를 인증기업에게 제공하고. 심사증거로써 인증기관에 제출한다.
- 8.5.8.7. 심사보고서는 심사의 증거로서 계약검토서류와 함께 인증 심의에 상정되고, 심의에 통과되 면 인증서가 발급된다.

#### 8.6. 사후관리심사

사후관리심사는 인증기업의 인증된 경영시스템이 인증기간동안 요구사항을 지속적으로 충족시키

인증시스템 지침서 Edition/Rev.: 1/5

Doc. No : CBI-01 Date : 2024/01/29

고 인증의 유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실시한다. 사후관리심사는 인증기업의 현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.

- 8.6.1. 사후심사관리는 다음을 포함하여야 한다.
  - (1) 내부심사 및 경영검토(단 6 개월 주기 시에는 실시예정 월 기록)
  - (2) 이전 심사에서 발견된 부적합에 대한 취해진 조치에 대한 검토
  - (3) 불만의 처리
  - (4) 인증고객의 목표 달성과 관련된 경영시스템의 효과성
  - (5) 지속적 개선을 목적으로 계획된 활동의 진행 경과
  - (6) 지속적인 운영관리
  - (7) 변경사항에 대한 검토
  - (8) 마크의 사용 및 기타 인증에 대한 언급
- 8.6.2.사후관리 심사의 주기
  - (1) 사후관리심사는 최초심사 인증결정일을 기준으로 심사 주기를 결정한다.
  - (2) 사후관리심사는 연 1회 이상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.
  - (3) 최초인증 후 1 차 사후심사는 인증결정일로부터 12 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.
  - (4) 인증기업의 사정으로 인증심사가 해당 주기에 진행될 수 없는 경우 최초 1 차심사를 제외하고, 해당연도에 벗어나지 않는 조건에서 최대 3 개월의 심사유예기간을 둔다.
  - (5) 심사유예기간 후에도 사후관리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해당 인증기업에게 인증정지안내 공문을 발송하여 인증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음을 통지한다.
- 8.6.3.사후관리심사 시 "인증심사 사전정보 패키지(CBQM-IA02)"를 통하여 인증기업의 변동사항을 확인한다. 변동사항이 발생하면 해당 내용을 검토하여 심사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.
- 8.6.4.사후관리심사는 2 단계심사와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되며, 심사종료 후 심사팀장은 사후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인증기관으로 제출한다.
- 8.6.5. 심사보고서는 심사의 증거로서 인증 심의에 상정되고, 심의에 통과되면 인증이 유지된다.

### 8.7. 갱신심사

경영시스템 전반의 지속적인 적합성 및 효과성을 확인하고, 인증범위에 대한 경영시스템의 지속적인 관련성 및 적용성을 확인하기 위한 심사이다. 갱신심사는 인증유효일자 이전에 계획되고실시되어야 한다.

8.7.1.갱신심사는 2 단계심사로 구성된다. 단, 경영시스템에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, 1 단계 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.

Doc. No : **CBI-01** 

Edition/Rev.: 1/5

Date: 2024/01/29

8.7.2.갱신심사 시 "인증심사 사전정보 패키지(CBQM-IA02)"를 통하여 인증기업의 변동사항을 확인한다. 변동사항이 발생하면 해당 내용을 검토하여 심사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.

- 8.7.3. 갱신심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.
  - (1) 내부 및 외부의 변경사항에 대한 경영시스템 전체의 효과성과 인증범위에 대한 경영시스템의 지속적인 관련성 및 적용성
  - (2) 전반적인 성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경영시스템의 효과성 및 개선을 유지하고자 하는 실증된 의 지
  - (3) 인증된 인증기업의 목표 달성과 각 경영시스템(들)의 의도된 결과를 달성하는 것과 관련한 경영시스템의 효과성
- 8.7.4.갱신심사는 2 단계심사와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되며, 심사종료 후 심사팀장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인증기관으로 제출한다.
- 8.7.5.심사보고서는 심사의 증거로서 계약검토서류와 함께 인증 심의에 상정되고, 심의에 통과되면 인증서가 발급된다.
- 8.7.6. 갱신 심사는 인증유효일자 전에 심사진행, 시정조치 및 인증심의 등 인증과 관련된 모든 활동 이 종결되어야 한다. 갱신심사가 불가할 경우 최초심사의 형태로 진행되어야 하며, 이때 심사일수는 갱신심사일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.
- 8.7.7. 갱신심사에서 부적합이 발생한 경우, 이에 대한 시정조치는 인증만료일자를 기반으로 제공되는 부적합 시정조치만료일보다 적을 수 있다. 인증만료일자까지 부적합에 대한 시정조치 종료 및 유효성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인증의 갱신이 불가하며, 이를 인증기업에게 통보한 다.
- 8.7.8. 2 단계심사가 인증의 만료 이전에 시작되었다는 전제 하에, 인증의 만료 이후 6 개월 이내에 인증을 복구할 수 있다. 인증서에 표기되는 인증유효일자(인증시작일)는 갱신인증 결정일자로 하며, 만료일은 기존 인증 유효일의 만료일을 따른다.
- 8.8. 특별심사
- 8.8.1.단기예고심사
- 8.8.1.1. 단기예고심사는 심사주기를 제외하여 실시되는 심사로 다음 사항에 실시될 수 있다.
  - (1) 고객의 불만 및 이의 제기시(필요할 경우)
  - (2) 고객이 계약서상의 준수사항 미준수
  - (3) 고객이 인증표준의 요구사항 미이행
  - (4) 인정기관으로부터 조사가 요구되는 경우

## Certificate process

Doc. No : CBI-01 Date : 2024/01/29

Edition/Rev.: 1/5

인증시스템 지침서

- (5) 인증마크 및 표시사항 그릇된 사용
- (6) 기타 인증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- 8.8.1.2. 단기예고는 사전에 인증기업에게 통보하는 것이 원칙이나, 경우에 따라 통보 없이 심사를 실시할 수도 있다.
- 8.8.1.3. 단기예고심사의 심사원은 특별심사대상조직과 이해관계 및 심사를 한적이 없는 검증위원 중에 선정한다. 단기예고심사에 선정된 심사원은 심사 후 사후관리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인증기관에 제출한다.
- 8.8.1.4. 심사보고서는 심사의 증거로서 인증 심의에 상정되고, 심의 결과에 따라 인증의 유지, 정지 또는 취소, 인정기관으로 보고 등의 후속조치가 결정된다.
- 8.9. 변경심사
- 8.9.1.인증기업의 변경사항 발생시 실시되는 심사로 다음사항을 포함한다.
  - (1) 고객사항변경(사항에 따라 문서검토로서 처리한다)
  - (2) 인증범위의 변경(확대, 축소 등)
  - (3) 인증표준의 변경
- 8.9.2.인증기업의 변경심사 요청 시 인증변경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접수한다. 이에 대한 추가 심사 가 필요한 경우 심사원을 배정하여 변경심사를 실시하도록 한다.
- 8.9.3.변경심사 심사원은 해당 변경사항에 대한 경영시스템 유효성을 확인하고, 인증 유지에 적합함을 평가한다. 심사원은 그 결과를 변경심사보고서에 기재하고 인증기관에 제출한다.
- 8.9.4.심사보고서는 심사의 증거로서 인증 심의에 상정되고, 심의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인증서가 재발급된다.
- 8.9.5.변경심사는 사후심사와 같이 실시할 수 있다. 이 경우 심사보고서는 사후 심사보고서로 대체할 수 있다.
- 9. 인증기관 전환(기 인증된 클라이언트의 인증기관 전환)
- 9.1.기 인증된 클라이언트가 인증기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검토/승인자는 사전 전환검토를 수행하며 전환 가능한 인증은 아래와 같다.
  - (1) IAF-MLA 에 가입된 인정기관 중 Level 3 및 해당되는 경우 Level 4 및 Level 5 에서의 IAF MLA 또는 지역 MLA 서명기관의 인정을 받은 인증기관의 인증이 전환되는 경우

Doc. No : **CBI-01** 

Edition/Rev.: 1/5
Date: 2024/01/29

9.2.전환은 현재 유효하게 인정된 인증서를 보유한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다. 인증업무를 중지하였거나 인정이 정지 또는 취소된 인증기관에서 승인된 인증의 경우, 전환은 6 개월 이내 또는 인증만료일 중 더 빠른 시점에 완료되어야 한다. 이 경우, 전환을 진행하기 전에 인증서 발행 의도를 인정기관에 알린다.

- 9.3. 사전 전환검토는 기 인증된 클라이언트의 인증유효성을 확인하는 것으로 계약검토/승인자가 문 서검토를 통해 실시하며, 다음의 사항들을 확인하여 '사전전환 검토서(CBQM-IA37)'를 작성한다.
  - (1) 클라이언트의 인증범위에 대한 기존 인증서를 발급한 인증기관과 본 인증기관의 인정범위 보 유여부
  - (2) 기존의 인증서를 발급한 인증기관의 인정범위가 해당 인정기관의 MLA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
  - (3) 인증 전환 사유
  - (4) 인증전환을 희망하는 사업장(들)이 유효한 인정된 인증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
  - (5) 최근심사보고서와 해당 시 부적합사항의 상태
  - (6) 접수된 불만사항 및 취해진 조치
  - (7) 인증 범위와 관련된 규제기관과 전환을 신청한 클라이언트 사이에 현재 체결된 협약
  - (8) 유효한 인증서의 보유
- 9.4. 문서검토를 통해 아래와 같이 추가검토가 필요한 사항(미해결된 중부적합이 있는 경우 등)이 확인되는 경우, 인증 유효성 확인을 위해 전환을 신청한 클라이언트에 적격한 인증심사원이 사전전환 방문을 수행한다.
  - 비고 1. 사전전환 방문은 인증심사로 고려하지 않는다.
- 9.5. 인증 결정자는 클라이언트의 모든 미해결된 중부적합에 대하여 시정 및 시정조치 실행을 검증하였거나, 미해결된 경부적합에 대하여 시정 및 시정조치 계획을 수락하기 전에는 전환을 승인하지 않는다.
- 9.6. 정지되었거나 정지될 우려가 있는 인증서에 대해서는 인증기관 변경을 수락할 수 없다. 만일 전환을 신청한 클라이언트에 대하여 기존의 인증서를 발급했던 인증기관의 인증상태를 검증할 수 없다면 최초심사로 진행되어야 하고, 이를 클라이언트에 서면으로 통보한다.
- 9.7. 추가적인 미종결 사항이나 잠재적인 문제점이 사전전환검토에서 발견되지 않는 경우, 통상적인 심의절차를 거쳐 인증서를 발행한다. 이때 인증서의 유효기간은 인증승인일로부터 전 인증기간 의 잔여 유효기간으로 한다.
- 9.8. 전환 이후 인증기관의 사후관리 및 갱신심사 주기에 따라서 심사를 수행 한다.
- 10. 인증기업의 권리 및 의무

## Certificate process

**인증시스템 지침서** Edition/Rev.: 1/5 Doc. No : **CBI-01** Date : **2024/01/29** 

- 10.1. 인증기업은 인증제도와 관련된 다음 법규의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한다.
  - (1) 적합성평가 관리의 관한 법률
- 10.2. 심사 시 시스템 구축관련 문서의 조사 및 이행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허용해야 한다.
  - (1) 인증범위에 해당되는 현장에 대한 출입
  - (2) 시스템 구축, 유지에 대한 기록의 열람 등 심사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
  - (3) 인증기업측 직원과의 면담
- 10.3. 인증등록 후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.
  - (1) 인증표준 및 인증기관 심사기준에 부합되도록 시스템을 유지해야 한다.
  - (2)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인증기관으로 서면 통보해야 한다.
    - ① 상호 및 대표자의 변경(소유권 변경 포함), 시스템에 영향을 주는 중대한 조직 및 시스템의 변경
    - ② 현장의 증설, 축소 및 이전
    - ③ 인증기업의 고객으로부터 심각한 불만 접수
    - ④ 인증범위의 확대 및 축소
    - ⑤ 인증기업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/안전보건/부패방지 관련 법규의 제.개정
    - ⑥ 환경/안전보건/부패관련 사고 시 또는 관련 법규 위반 시(환경/안전보건/부패방지/규범준수에 한함)
    - ⑦ 담당자 및 전화번호 등 정보변경
  - (3) 인증기관의 기준에 따라 모든 종류의 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한다.
  - (4) 인증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인정기관에서 직접 실시하는 입회심사 및 특별 사후관리 심사 시이를 허용하여야 하며, 이를 거부할 경우 인증 계약이 무효화될 수 있다.
  - (5) 인증마크 사용 및 홍보요령을 준수해야 한다.
  - (6) 심사비용은 정해진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한다.
  - (7) 발행된 부적합보고서는 요구된 기한 내에 시정조치하여 인증원으로 제출해야 한다.
  - (8) 인증신청 및 인증유지 과정에서 인증기관과 인증기업 사이에 발생된 모든 관련 서류를 보관/ 유지해야 한다. (특히 부적합보고서 <유효성 확인>란은 차기 심사 시 확인됨을 유의해야 한 다.)
  - (9) 인증을 획득한 시스템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자, 고객 및 소속직원으로부터 접수된 불만사항 및 시정조치 사항을 기록하고 인증기관 요청 시 해당 기록을 제출해야 한다.
  - (10) 인증기업은 인증기관의 명예를 손상시킬 수 있는 방식으로 인증을 이용해서는 안되며, 인증 기관이 판단할 때 인증을 오도하거나 권한이 없는 기관이 인증한 것처럼 오도되게 해서는 안 된다.

10.4. 인증심사 비용에 관한 사항

인증절차안내서

Certificate process

**인증시스템 지침서** Edition/Rev.: 1/5 Doc. No : **CBI-01** Date : **2024/01/29** 

- 10.4.1. 인증심사 비용은 별도의 협약이 없는 경우 다음과 같이 지불되어야 한다.
  - (1) 신청비 : 신청서 제출시
  - (2) 심사비 및 출장비 : 심사수행 7일 전
- 10.4.2. 심사비는 1단계 심사, 2단계 심사, 사후심사, 변경심사로 구분되며 이외에 특별사후심사 또는 현장확인심사가 실시되는 경우 계약 시 예정되지 않은 별도의 청구서가 발행될 수 있다.
- 11. 인증의 승인, 유지, 범위변경(확대/축소), 정지 및 취소 기준
- 11.1. 인증의 유지를 위해 인증기업은 본 인증절차안내서에 따라 의무를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.
- 11.2. 인증의 정지
- 11.2.1. 다음의 경우 인증의 효력이 정지된다.
  - (1) 정해진 기한 내에 사후심사를 수검하지 않아 인증효력정지에 대한 예고공문을 접수한 후 1개 월 이내에 사후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
  - (2) 심사결과 적용 표준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한 자원 및 조직이 없거나 인증시스템이 대부분 가동되지 않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
  - (3) 이해관계자로부터 클레임 또는 사회적 물의로 인하여 인증시스템에 대한 신뢰성이 없는 경우
  - (4) 인증제도 및 인증요구사항의 변경에 대한 인증기업의 대응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경우
  - (5) 중부적합의 발생으로 재확인심사한 결과 중부적합이 재발생된 경우
  - (6) 인증마크의 오용으로 시정명령을 받은 후 1개월 내에 시정되지 않은 경우
  - (7) 인증심사비용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
  - (8) 인증계약에 따른 인증기업의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
  - (9) 인증서의 적용범위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
  - (10) 인증신청 및 심사 중 제공된 정보나 문서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
- 11.3. 인증의 취소
- 11.3.1. 다음의 경우 인증의 효력이 취소된다.
  - (1) 상기 효력정지 또는 인증유예 처분에도 불구하고 3개월이 지나도록 시정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(단, 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인증기관의 판단에 따라 문서화되고, KAB의 동의를 얻을 경우 취소 유예될 수 있다.)
  - (2) 인증기업이 공식적으로 인증서를 반납한 경우
  - (3) 인증범위에 포함된 제품(공정)의 생산, 활동이나 서비스가 중단된 경우(해당 범위에 한함)
  - (4) 인증기업의 해체, 연락두절 등으로 조직의 실체가 없어지거나 확인되지 않은 경우
  - (5) 인증서 유효기간 내에 인증효력이 3회 이상 정지된 경우
  - (6) 인증서 회수 요청 후 1개월을 초과하여 불응한 경우
- 11.4. 인증범위 변경

Doc. No: CBI-01

Date: 2024/01/29

Edition/Rev.: 1/5

인증된 조직이 인증범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"변경신청서"를 작성하여 신청하고 인증기관은 해당 변경사항의 확인 방법을 결정하여 심사가 필요한 경우 심사를 진행한다. 심사결과는 "인증등록 및 유지(CBP-17)" 절차에 준하여 처리된다.

#### 11.5. 인증범위의 축소

#### 11.5.1. 인증범위축소의 기준

- (1) 인증범위에 포함된 일부 제품(공정)의 생산, 활동이나 서비스를 중단한 경우
- (2) 인증주기내에 일부 인증범위의 적합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
- (3) 일반적으로 조직의 변경 신청(품목 및 활동 축소)에 의해서 인증범위가 축소되는 경우는 8.2[표 1]에 따른다.

#### 11.5.2. 인증범위축소 절차

- (1) 담당자는 인증범위 축소기준에 해당하는 클라이언트가 발생한 경우 이를 즉시 인증부서장에게 보고한다.
- (2) 심사 중 확인된 경우, 심사팀장은 즉시 인증원에 보고하고 클라이언트에게 인증축소 사실을 안내한 뒤 심사보고서에 관련 내용을 기록한다.
- (3) 인증부서장은 다음 사항이 포함된 인증범위축소 안내문을 클라이언트에게 발송하여 인증범위축소 사실을 통보한다.
  - ① 인증범위축소의 사유 및 인증서 회수 요청
  - ② 인증범위축소예정일
  - ③ 인증범위축소 시 공표 절차 (인정기관에 통보, 인증기관 홈페이지 게시 등)
  - ④ 인증범위축소 후 변경된 인증서가 발행된다는 안내
  - ⑤ 기존 인증서 사용이 발각되는 경우의 법적 조치

#### 12. 불만, 이의제기 및 분쟁

- 12.1. 인증기관의 인증운영에 대하여 불만, 이의 사항이 있을 때에는 45일이 경과하기 전에 불만/이의 조치요구서 서식을 이용하여 불만 및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.
  - (1) 정당한 사유 없이 인증 신청이 거부되었을 경우
  - (2) 심사진행 또는 결과에 대하여 동의할 수 없는 경우
  - (3) 인증기관 또는 심사원이 인증관련 법령 및 기준을 준수하지 않아 유/무형의 피해가 있었거나 예상되는 경우
  - (4) 기타 인증기관의 업무처리가 불만족스러운 경우

#### 12.2. 처리절차

불만 및 이의제기→ 접수→ 검토 및 조정→ 분석 및 조치→ 결과안내→ 고객만족→ 경영검토(반

Doc. No : **CBI-01** 

인증시스템 지침서

1 Date: 2024/01/29

Edition/Rev.: 1/5

영)

- 12.3.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처리팀이 구성될 수 있다. 단, 해당 사안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인원은 참여를 배제한다.
- 12.4. 불만, 이의제기가 접수되는 경우 인증기관은 1개월 이내에 조치결과를 통보한다.
- 12.5. 인증기관의 조치 결과에 동의할 수 없는 경우 중재 또는 KAB의 유권해석에 따른다.

#### 13. 인증표시 및 로고의 사용방법과 홍보방법

- 13.1. 인증등록 후에는 인증표시를 사용하고 인증에 대한 홍보를 할 수 있다. 단, 이러한 홍보의 기준은 관련 법규(표시·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)에 따라 인증등록 시 크레비즈인증원이 제공하는 내용에 따라야 한다.
  - (1) 인터넷, 브로셔나 광고 또는 기타 문서와 같은 전달매체에 인증 상태에 대한 언급 시, 인증기관의 요구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  - (2) 인증기업은 인증에 대해 오해의 소지가 있는 진술을 하면 안된다.
  - (3) 인증서 또는 인증서의 일부를 오해가 있는 방식으로 사용하면 안된다.
  - (4) 인증의 취소 시, 크레비즈인증원의 지시에 따라 인증사실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모든 홍보물의 사용을 중지하여야 한다.
  - (5) 인증범위가 축소되는 경우, 모든 홍보물을 수정하여야 한다.
  - (6) 경영시스템 인증에 대하여 크레비즈인증원이 제품(서비스 포함) 또는 프로세스를 인증한 것으로 언급하여서는 안된다.
  - (7) 인증이 인증범위 이외의 활동과 사업장에 적용됨을 암시하여서는 안된다.
  - (8) 크레비즈인증원의 명예를 손상시켜 공공의 신뢰를 상실하게 하는 방식으로 인증을 사용하지 않는다.
- 13.2. 인증표시 및 인증마크 사용 및 홍보기준
  - (1) 인증마크 사용기준
    - ① 인증마크 사용이 가능한 경우
      - 광고 또는 홍보물 : 산업분류상 인증기업의 제품으로 분류되지 않는 명판, 명함 및 인증기업의 교재, 편지지, 브로셔, 문서, 송장 등의 인쇄물 또는 제작물 또는 기타 광고 수단
    - ② 인증마크 사용이 제한되는 경우
      - 제품 및 제품포장
      - 거래 샘플 또는 기타 제품 적합성에 관한 진술서 (예: 시험성적서, 교정성적서 또는 검사성적서)
      - 깃발, 건물 또는 차량
  - (2) 인증마크 사용방법

인증시스템 지침서 Edition/Rev.: 1/5 Doc. No : CBI-01 Date : 2024/01/29

- ② 마크는 원본을 확대/축소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비율이 유지되어야 하며, 그 크기는 최소 가로 15mm, 세로 10mm 이상이 되어야 한다.
- ③ 크레비즈인증원 인증마크 하단에는 인증번호(예: QAXXXXXX)를 함께 표기하여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.
- ④ 인정기관의 마크 하단에는 인증기관의 지정번호(예: KAB-QC-03)를 함께 표기하여 사용해 야 한다.

경영시스템별 지정번호는 아래와 같다.

품질경영시스템: KAB-QC-03환경경영시스템: KAB-EC-02

■ 안전보건경영시스템: KAB-OC-11

- ⑤ 인증마크를 재생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단일 색으로 인증표시의 색상이 명확하게 나타날수 있는 바탕색 위에 재생(인쇄, 복사 등)하여 사용해야 한다.
- ⑥ KAB 인증표시는 지정된 색상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할 경우 흑백으로 사용할 수 있다.
- ⑦ 인증마크 및 로고는 크레비즈인증원 홈페이지(www.crebizqm.co.kr)에서 제공된다.
- ⑧ 사용 예시는 [부속서 A-1 인증표시 및 인증마크 사용예시]를 참고한다.
- (3) 인증표시 사용기준
  - ① 경영시스템 인증을 받았다는 문구를 제품포장 또는 동반되는 정보(accompanying information)에 사용할 수 있다.
    - 제품포장 : 제품을 해체하거나 파손하지 않고 제거할 수 있는 것.
    - 동반되는 정보(accompanying information) : 분리하여 사용하거나 쉽게 떼어낼 수 있는 것.
  - ② 유형 라벨(Type label)이나 식별판(identification plates)은 제품의 일부로 간주되어 사용할 수 없다.
  - ③ 문구는 다음을 포함하여야 한다.
    - 브랜드나 회사명
    - 경영시스템 유형 (예: 품질, 환경) 및 해당하는 표준(예: ISO 9001, ISO 14001)
    - 인증서를 발행한 인증기관(크레비즈인증원)
  - ④ 사용 예시는 [부속서 A-1 인증표시 및 인증마크 사용예시]를 참고한다.
- (4) 인증기업은 문서, 송장, 광고 등에 인증표시, 인증기관명, 인증표준, 인증번호 등을 사용하여 인증을 받은 기업임을 홍보할 수 있다.

인증절차안내서

Certificate process

인증시스템 지침서 Edition/Rev.: 1/5 Doc. No : CBI-01 Date : 2024/01/29

(5) 인증기업은 생산한 제품에 인증표시, 인증기관명, 인증표준, 인증번호를 사용할 수 없으며, 인증기관이 제품에 대하여 인증을 한 것으로 오해하게 해서는 안된다.

(6) 인증기업은 표시·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의 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.

## 13.3. 인증마크 오용 시 조치

- (1) 인증을 받지 않은 조직이 인증을 받았다고 허위로 인증표시를 사용하는 경우, 표시·광고의 공 정화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의 과징금 부가기준에 의거하여 조치한다.
- (2) 인증마크 사용기준에 부적절한 경우 시정조치 내용 및 기한이 명기된 크레비즈인증원의 부적합보고서를 송부하며, 미조치 시 "CBP-17 인증등록 및 유지 9. 인증의 정지 및 취소"절차에 따른다.

Doc. No : **CBI-01** 

Date: 2024/01/29

Edition/Rev.: 1/5

## 좌우대칭 사용 시





KAB-XX-XX

## 상하대칭 사용 시





## KAB-XX-XX

## ■ 인증문구 사용예시

예시문구1: "OO기업은 품질경영시스템(ISO 9001)을 크레비즈인증원으로부터 인증 받았습니다."

예시문구2: "크레비즈인증원으로부터 ISO 9001표준에 따라 인증 받은 품질경영시스템에 의해 제조된 (제품명)"

# 인증절차안내서

## Certificate process

**인증시스템 지침서** Edition/Rev.: 1/5 Doc. No : **CBI-01** Date : **2024/01/29** 

## 14. 참고 문서

- (1) 문서화된 정보(CBP-09)
- (2) 인증정보제공 (CBP-10)
- (3) 이의제기 및 불만(CBP-11)
- (4) 인증심사준비(CBP-14)
- (5) 인증심사(CBP-16)
- (6) 인증등록 및 유지(CBP-17)

**인증시스템 지침서** Doc. No : **CBI-01** 

Edition/Rev.: 1/5
Date: 2024/01/29

## **15.** 부속서 1

인증수행 범위 별 지정 현황

## CBP-15 부속서 1

## 인증수행 범위별 지정현황

인증수행범위			지정여부		
코	이즈스템 바이머		TT TI = 1 TH		비고
	인증수행 범위명	품질	환경	보건	
01	농업, 임업 및 어업				
02	광업 및 채석업				
03	음식료 및 담배 제조업	0	0		
04	섬유 및 섬유제품 제조업	0	0		
05	05 가죽 및 가죽제품 제조업				
06	06 목재 및 목재제품 제조업				
07	07 펄프, 종이, 종이제품 제조업		0		
80	출판업	0			
09	인쇄업	0	0		
10	코크스,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	0	0		
11	핵연료 제조업				
12	화학물질, 화학약품 및 화학섬유 제조업	0	0	0	
13	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	0	0		
14	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	0	0	0	
15	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	0	0	0	
16	콘크리트,시멘트, 석회 및 플라스터 등 제조업	0	0		
17	1차 금속 및 금속가공제품 제조업	0	0	0	
18	기계 및 장비 제조업	0	0	0	
19	전자기기 및 광학기기 제조업	0	0	0	
20	조선업	0	0		
21	항공기 제조업	0			
22	기타 운송장비 제조업	0	0	0	
23	기타 제조업	0	0		
24	재생업	0			
25	전기 공급업	0	0		
26	연료용 가스 공급업	0	0		
27	수도 및 증기 공급업		0		
28	건설업	0	0	0	
29	도소매업, 자동차 및 모터사이클 수리업,	0			
29	개인 및 가정용품 수리업		0		
30	숙박업, 음식점업 및 주점업	0	0	0	
31	운수업, 창고업 및 통신업	0		0	
32	금융업, 보험업, 부동산업 및 임대업	0			
33	정보 기술업	0	0		
34	엔지니어링 서비스	0	0	0	
35	기타 서비스	0	0	0	
36	공공 행정	0	0		
37	교육	0			
38	보건 및 사회복지				
39	기타사회 서비스	0	0	0	

**인증절차안내서** Certificate process

**안내서** 인증시스템 지침서 Doc. No : CBI-01

Edition/Rev.: 1/5
Date: 2024/01/29

계 34 27 13